



제420회국회(임시회)
제1차 교육위원회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교육감의 업무에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포함〉

■ 김대식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5221호)

2024. 12.

교 육 위 원 회

전문위원 강대훈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----------------	---
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II . 검토의견	2
------------------	---

※ 참고자료

1.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	7
2.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요	8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김대식의원 등 15인

나. 발 의 일 : 2024. 11. 4.

다. 회 부 일 : 2024. 11. 5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바,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과,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,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 유도 등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.

이에, 시도교육청별로 전담부서를 구성하여, 학교폭력 조사·상담에 관한 전문가 및 피해전담 조력인,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등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적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, 학교는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.

다만, 사전 개입과 예방 차원에서의 갈등 조정, 관계개선과 교육적 차원에서의 관계회복 부분도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의 교육력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임.

이에,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에 학교폭력 업무 관련 갈등조정, 관계개선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 조기 지원 업무를 신설하여 교육감의 임무(책무)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교육감의 조사·상담 대상에 갈등조정, 관계개선,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 조기 지원을 포함하여 교육감의 학교폭력 사전 개입과 예방 차원에서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11조의2 제1항제1호 신설).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학교폭력 조사·상담 등)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·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. <신 설> 1. ~ 6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	제11조의2(학교폭력 조사·상담 등) ① -- ----- ----- ----- 1. <u>갈등조정, 관계개선,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 조기 지원</u> 2. ~ 7. (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지난 2023년 10월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학교폭력예방법”이라 함) 일부개정 당시, 시·도 교육청에 설치하는 전담 부서의 업무에 기존의 ‘학교폭력의 예방·대책’에 더하여 ‘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’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¹⁾, 이는 피해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음.

1)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(교육감의 임무) ① 교육감은 시·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·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또한, 같은 해 12월에 교육부는 「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방안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강화 방안」을 발표하면서,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,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 증원 및 업무 범위 확대 등 사안 처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.

이러한 개선 대책은 주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이후, 학교장의 자체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, 평소 생활지도에 해당하는 ‘갈등조정’ 및 ‘관계개선’ 활동²⁾이나,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자체해결 사안으로 분류된 경우 실시되는 ‘관계회복 프로그램’³⁾⁴⁾의 활성화 방안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.

2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제3호,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.

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제7조(인성 및 대인관계)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.

1.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
2.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
3.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, **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**

3)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(학교의 장의 자체해결)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(이하 “관계회복 프로그램”이라 한다)을 권유할 수 있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3(학교의 장의 자체해결)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·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4) 참고자료2 「관계회복 프로그램 개요」 참조.

그러나, 이러한 활동 및 프로그램은 학생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, 학교폭력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예방적 접근으로, 사건 발생 후의 조치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의 책무에 갈등조정, 관계개선,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 조기 지원을 명시하여 예방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. 이를 통해 학생들의 갈등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고 개입하여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또한 갈등조정, 관계개선 활동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종래에 시·도 교육청이 아닌 학교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것이었으나⁵⁾, 최근에는 학교가 시·도교육청에 요청할 경우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, 예방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시·도교육청 차원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.

다만,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시·도교육청의 전담 부서에 해당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를 신설하려는 취지이나, 개정 대상 조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로 교육감의 학교폭력 ‘조사·상담 업무’에 국한되는 조문임.

5) 참고자료1 「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」 참조.

반면, 시·도교육청 전담부서의 업무 범위는 같은 법 제11조제14항⁶⁾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8조제1항⁷⁾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, 동 시행령 제3호에 ‘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’이 전담부서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, 현행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여 갈등조정,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교육부는 교육감이 관할 시·도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를 통해 피해학생 지원 및 관련학생 관계회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,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한편, 경기도교육청은 생활지도 차원에서의 상시 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활동과 학교장 자체해결 및 관계회복 등 교육적 해결 차원의 조치 또한 사안처리의 공정성 못지않게 주요한 업무로 보인다면,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6)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(교육감의 임무) ① 교육감은 시·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·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(생략)

⑭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,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제1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7)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8조(전담부서의 구성 등)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·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.

1.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

2.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

3.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

3의2.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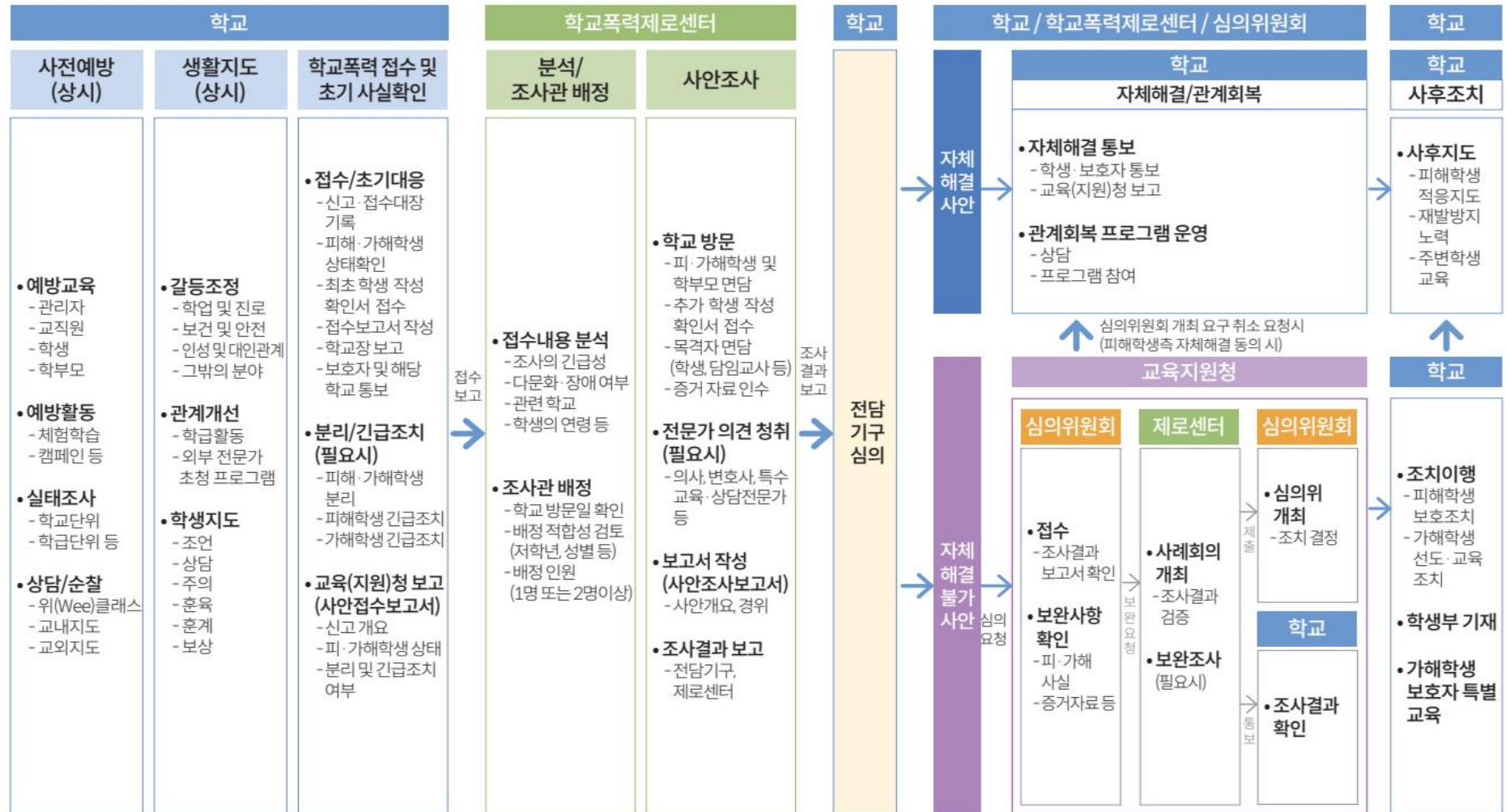
3의3. 학교폭력 관련 조사·상담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·대책 및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

문 의 처
02)6788-5184

참고자료1

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



자료: 교육부

1. 관계회복

 관련법률 및 시행령
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(학교의 장의 자체해결)

-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(이하 "관계회복 프로그램"이라 한다)을 권유할 수 있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3(학교의 장의 자체해결)

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·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 관계회복의 개념

- 관계회복이란 두 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, 소통,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.

 관계회복의 목적

- 관련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안을 중심으로 개입하여 양측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상호 이해 및 소통,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학생 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진심어린 사과와 가해학생 측의 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하고 나아가 관계 개선을 통한 회복을 도모한다.
- 심리·정서적 안정 및 학교와 일상생활, 또래(교우) 관계 등의 안정적 적응과 신속한 복귀, 회복을 조력한다.
※ 학교폭력 관계회복은 진행 단계별로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한다.

 운영 대상 및 방법

- 학교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(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)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,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(법률 제13조의2제3항)
-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해당 관련 학생(피해 및 가해측)을 대상으로 진행한다.
- 사전 개별면담 : 양측의 학생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각각의 욕구와 사안에 대한 해결 방식, 심리·정서적 상태 등을 탐색한다.

8) 교육부, 「2024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」 64~65p에서 발췌

- 관계회복 프로그램(직접대면 및 소통) : 양측 학생이 준비와 동의가 되었을 때 서로 대면하여 소통의 과정을 통해 관계회복을 하도록 조력한다.

※ '학교폭력 관계회복'은 일반 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한 관련 학생(피해학생 및 가해학생)을 대상으로 함.

☑ 관계회복의 운영 주체

- 학교는 사안에 따라 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.
- 사안에 대한 내용 및 학생들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는 교사가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.
- 학교의 사정에 맞게 가장 적합한 교사에게 역할을 배정하되 아래의 역할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.

<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시 역할 예시>

교장	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의 총괄
교감	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리 ■ 외부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진행
담임교사	■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, 동의 확인 진행 및 협의 ■ 관계회복 프로그램 이후 사후 관리 진행 및 협의 ■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
책임교사	■ 사안에 대한 파악 및 공유 ■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
상담교사	■ 심리·정서적 개입 및 진행 ■ 기타 정서적 위기 상황에서의 자문 ■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

참고 : 관계회복 진행 시 유의사항

-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양측 학생이 동의할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.
-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한 명이 중단하고 싶으면 중단될 수 있다.
-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거나 개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.
- 학교 및 교사는 사전에 가급적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프로그램 취지를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한다.
- 서로 소통함으로써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안내한다.
-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양측 학생이 학교 및 일상생활과 또래와의 관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안내한다.
- 피해학생에 대하여 모든 단계 시작 시 현재 마음과 생각, 2차 피해(재발 및 보복 등), 참여 의사 등을 확인함으로써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이 강제적인 것이 아닌 피해학생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.

[출처 : 푸른나무재단]